

2024년도 문화유산위원회

제2차 중능분화유산분과 위원회 회의자료

- ▣ 회의일시 : 2024. 6. 18. (화요일), 14:00 ~
- ▣ 장 소 :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

목 차

【심의사항】

-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| 과주 장릉 주변 공장시설신축 및 부지조성 |
| 2 | 구리 동구릉 주변 주상복합 신축(허가변경) |
| 3 | (사적)과주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조정 |
| 4 | (사적)남양주 홍릉과 유릉 외 6개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 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|
| 5 | (사적)고양 서오릉 및 서삼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|

【보고사항】

-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| 궁능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 관련 안전부의 기준(개정) |
| 2 | 경복궁 모두를 위한(무장애) 공간 조성 사업 보고 |
| 3 |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처리 보고 |

심 의 사 항

【 심의사항 】

안건번호 공능 2024-06-01

1. 파주 장릉 주변 공장시설신축 및 부지조성

가. 제안사항

경기도 파주시 소재 사적 「파주 장릉」 주변 공장시설 부지조성 및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파주 장릉 주변에 공장시설 부지조성 및 신축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
- 공능문화재분과 위원회('24.3.19.) 부결 :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○○○
- (2) 대상문화유산명 : 파주 장릉(사적)
 - 소재지 : 경기도 파주시 장릉로 90(탄현면)
- (3) 신청내용
 - 위치 :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 852 외 9필지(문화유산구역에서 81m 이격)
 - 허용기준 2구역(평지붕 8m, 경사지붕 12m 이하)
 - 사업내용 : 공장시설 부지조성 및 신축

구분	기존('24.3.19./부결)	금회(안)	비고
대지면적	4,999㎡ (건축용지 4,933㎡, 도로용지 66㎡)	좌동	
건축(연)면적	1,947㎡(4,748.67㎡)	좌동	
건축규모	1개동, 지상3층, 일반철골조 / 25.3m	2개동, 지상2층, 일반철골조 / 17m	지하저수조 1동 추가, 높이 83m 감소
부지조성	식생블럭(H=0~3.4m) : L=139.3m, 보강토옹벽(H=0~4.5m) L=188.9m 부지계획고 : 25.5m 절토량(최고절토고) : 3,758.11㎡(3.4m) 성토량(최고성토고) : 6,060.94㎡(4.5m) 조경식재 : 잣나무 110주, 철쭉나무 640주	식생블럭(H=0~5m) : L=194.1m, 보강토옹벽(H=0~4.5m) L=146.8m 부지계획고 : 23.3~24.1m 절토량(최고절토고) : 4,999.46㎡(5m) 성토량(최고성토고) : 621.13㎡(4.5m) 조경식재 : 잣나무 110주, 철쭉나무 640주	식생블럭 규모증가, 보강토옹벽 길이감소, 부지계획고 변경, 절토량 증가, 성토량 감소

- (4) 신청인 의견 : 없음

【 심의사항 】

안전번호 공능 2024-06-02

2. 구리 동구릉 주변 주상복합 신축(허가변경)

가. 제안사항

경기도 구리시 소재 사적 「구리 동구릉」 주변 주상복합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(허가변경)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구리 동구릉 주변에 주상복합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
 - '22년 공능문화재분과 위원회(9.20./10.18./12.20.) / 부결 :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
 - '23년 공능문화재분과 위원회('23.1.17.) / 조건부가결 :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최고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할 것
 - '23.10.23.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 : 허가(자체처리)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○○○
- (2) 대상문화유산명 : 구리 동구릉(사적)
 - 소재지 :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197(인창동)
- (3) 신청내용
 - 위치 :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701, 701-1, 701-2 (문화유산구역에서 420m 이격)
 - 허용기준 6구역(건축물 최고높이 45m 이하)
 - 사업내용 : 주상복합 신축

구분	기존 ('22.9.20./부결)	기존 ('22.10.18./부결)	기존 ('22.12.20./부결)	기존('23.1.17./조건부가결)	기존('23.10.23./자체처리)	금회(안)
부지 (면적)	인창동 701,701-1 (2,234.7㎡)				인창동 701,701-1, 701-2 (2,500.3㎡)	좌동
건축용도	주상복합					좌동
건축면적	1,563.41㎡	1,564㎡	1,561.69㎡	1,564㎡	1,563.79㎡	1,753.73㎡
연면적	22,135.9㎡	22,039.07㎡	22,129.06㎡	21,782.01㎡	20,460.04㎡	19,564.88㎡
건축규모	2개동, 지하5층 ~ 지상17~23층 (최고높이: 74.6m)	2개동, 지하5층 ~ 지상20층 (최고높이: 63.05m)	1개동, 지하5층 ~ 지상18층 (최고높이: 56.95m)	2개동, 지하5층 ~ 지상17층 (최고높이: 53.8m)	2개동, 지하4층 ~ 지상17층 (최고높이: 53.8m)	2개동, 지하3층 ~ 지상22층 (최고높이: 69.33m)
비고					부지추가, 건축물 위치변경 (469m) 및 평면 변경	건축면적, 높이, 평면 형태 및 배치 등 변경

- (4) 신청인 의견 : 해당 필지는 문화유산구역으로부터 200m 이상 이격된 주거지역이며, 주변에 절대고도가 100m를 초과하는 단지도 다수 확인되고 있음.

【 심의사항 】

안건번호 공능 2024-06-03

**3. 파주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
허용기준 조정**

가. 제안사항

경기도 소재 사적 「파주 장릉」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사적 「파주 장릉」 문화유산구역 필지 중 2008년 추가지정되었다가 2023년 해제된 1필지에 대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2구역으로 조정하기 위해 신청한 사항임
 - 사적분과 위원회('23.9.13.) 문화유산구역 조정(일부 해제) 가결
 - : 사적 파주 장릉 문화유산구역과 지형적으로 연속성이 단절되어 있고 일체성과 장소성이 미미함에 따라 사적 해제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○○○
- (2) 대상문화유산 : 사적 「파주 장릉」 (경기도 파주시 장릉로 90)
- (3) 신청내용
 - 위치 :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 792-7
 - 주요내용 : 해제 지정된 필지를 허용기준 2구역으로 조정
- (4) 신청인 의견 : 없음

【 심의사항 】

안건번호 공능 2024-06-04

4. 남양주 흥릉과 유릉 외 6개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

가. 제안사항

경기도 소재 사적 「남양주 흥릉과 유릉」, 「남양주 사릉·광해군묘·성묘·안빈묘」, 「남양주 순강원」, 「남양주 영빈묘」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「남양주 흥릉과 유릉」, 「남양주 사릉·광해군묘·성묘·안빈묘」, 「남양주 순강원」, 「남양주 영빈묘」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조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
 - 공능문화재분과 위원회('23.10.17.) 조건부가결 : 금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하여 시행할 것 (허용기준 내 문구 변경 및 공통사항 내용 조정)
 - 공능문화재분과 위원회('24.1.16.) 접수 (허용기준 구역 표기 조정안)

다. 주요내용

(1) 신청인 : ○○○

(2) 대상문화유산

- 사적 「남양주 흥릉과 유릉」 (경기도 남양주시 흥유릉로 352-1)
- 사적 「남양주 사릉」 (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 180)
- 사적 「남양주 광해군묘」 (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337-4)
- 사적 「남양주 성묘」 (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312-8)
- 사적 「남양주 안빈묘」 (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417-1)
- 사적 「남양주 순강원」 (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2로 84-31 외)
- 사적 「남양주 영빈묘」 (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175)

(3) 신청내용 :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

○ 주요내용

-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조정

【 심의사항 】

안건번호 공능 2024-06-05

5. 고양 서오릉 및 고양 서삼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

가. 제안사항

경기도 소재 사적 「고양 서오릉」 및 「고양 서삼릉」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「고양 서오릉」, 「고양 서삼릉」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조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
- 공능문화재분과 위원회('23.10.17.) 조건부가결 : 금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하여 시행할 것 (허용기준 내 문구 변경 및 공통사항 내용 조정)
- 공능문화재분과 위원회('24.1.16.) 접수 (허용기준 구역 표기 조정안)
- 공능문화유산분과 위원회('24.5.21.) 보류 : 심도있는 사전 검토 필요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○○○
- (2) 대상문화유산
 - 사적 「고양 서오릉」 (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75-92)
 - 사적 「고양 서삼릉」 (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삼릉길 233-126)
- (3) 신청내용 :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
 - 주요내용
 -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조정

보고사항

【 보고사항 】

안전번호 궁능 2024-06-06

1. 궁·능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 관련 안전부의 기준(개정)

가. 제안사항

국가유산 체제 전환 등에 따라 ‘궁·능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 관련 안전부의 기준’의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.

나. 보고사유

‘궁·능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 관련 안전부의 기준’을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부합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한 사항임

다. 주요내용

- 신청인 : ○○○
- 대상문화유산명 : 궁능유적본부 소관 촬영·장소 사용 대상 문화유산 일원(궁궐·왕릉)
- 보고내용

신·구조문대비표	
현행	개정안
<p>궁·능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 관련 안전부의 기준</p> <p>2023. 6. 20. 제6차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</p> <p>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<u>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</u>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운영함에 있어 궁능에서의 촬영·장소사용 허가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.</p> <p>제2조(안전 구분) ① (생략) ② 안전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</p> <p>1 (생략) 2. 보고사항 : 심의대상을 제외한 아래 각 목에 해당되는 사항 가. <u>문화재청장</u> 또는 궁능유적본부</p>	<p>궁·능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 관련 안전부의 기준</p> <p>2024. 6. 18. 제2차 <u>궁능문화유산분과위원회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<u>궁능문화유산분과위원회</u>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운영함에 있어 궁능에서의 촬영·장소사용 허가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.</p> <p>제2조(안전 구분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안전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</p> <p>1. (생략) 2. 보고사항 : 심의대상을 제외한 아래 각 목에 해당되는 사항 가. <u>국가유산청장</u> 또는 궁능유적본부</p>

장이 주최·주관하는 주요 촬영 및 장소사용 관한 사항

제3조(심의) ① 공능문화재분과위원회는 「공·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」 제24조 및 제32조에서 정한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~ 2. (생략)
3. 기타 공능유적본부장이 문화재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친 사항

[별표]

공능문화재분과위원회 심의대상

구분	심 의 대 상
촬영	1. 국보 및 보물인 전각 내부에서의 촬영 2. 공개 제한지역에서의 촬영 3.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촬영 가. 촬영을 위해 입장하는 인원이 60명 이상일 경우의 촬영 나. 크레인(20톤 초과) 등 대형장비(발전차는 제외) 반입이 필요한 촬영 4. 공능유적기관의 장이 <u>문화재</u> 보존 관리를 위해 심의 요청한 촬영
장소 사용	1. 국보 및 보물인 전각 내부에서의 장소사용 2. 공개 제한지역에서의 장소사용 3.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장소사용 가. 공연을 목적으로 한 100㎡ 이상의 무대설치 나. 참여인원 300명 또는 관람석 150석 이상 규모의 행사 4. 공능유적기관의 장이 <u>문화재</u> 보존 관리를 위해 심의 요청한 장소사용

장이 주최·주관하는 주요 촬영 및 장소사용 관한 사항

제3조(심의) ① 공능문화유산분과위원회는 「공·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」 제24조 및 제32조에서 정한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~ 2. (현행과 같음)
3. 기타 공능유적본부장이 문화유산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친 사항

[별표]

공능문화유산분과위원회 심의대상

구분	심 의 대 상
촬영	1. 국보 및 보물인 전각 내부에서의 촬영 2. 공개 제한지역에서의 촬영 3.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촬영 가. 촬영을 위해 입장하는 인원이 60명 이상일 경우의 촬영 나. 크레인(20톤 초과) 등 대형장비(발전차는 제외) 반입이 필요한 촬영 4. 공능유적기관의 장이 <u>문화유산</u> 보존 관리를 위해 심의 요청한 촬영
장소 사용	1. 국보 및 보물인 전각 내부에서의 장소사용 2. 공개 제한지역에서의 장소사용 3.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장소사용 가. 공연을 목적으로 한 100㎡ 이상의 무대설치 나. 참여인원 300명 또는 관람석 150석 이상 규모의 행사 4. 공능유적기관의 장이 <u>문화유산</u> 보존 관리를 위해 심의 요청한 장소사용

(4) 신청인 의견

-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부합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
2. 경북궁 모두를 위한(무장애) 공간 조성 사업 보고

가. 보고사항

문화유산 경북궁을 장애, 연령, 성별 등 불편없이 국민 모두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'경북궁 모두를 위한(무장애) 공간 조성 사업'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.

나. 보고사유

- 대표 문화유산인 경북궁을 노약자, 장애인, 임산부 등 차별없이 모두가 이용하는 모두를 위한(무장애)공간 조성, 확산 기반을 마련함으로 수요자 중심의 문턱 없는 문화유산 향유권 확보하고자 본 사업을 실시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○○○
- (2) 대상문화유산명 : 경북궁 (사적 / 1963.1.21. 지정)
 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61
- (3) 신청내용
 - 위치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61(문화유산구역 내)
 - 사업내용

구분	사업 내용		비고(현황)
모두를 위한 (무장애)공간 조성	(매개시설)	(경사로) 노후 및 기울기 미달 132개소 신규 제작 설치 - 현 위치 철거 후 신규 재설치 (안전 목책) 전각 기단 안전 목책 36개소 제작 설치 - 고정형 아닌 이동식 목책 제작 설치	(경사로) 기존 164개소 (안전 목책) 기존 15개소
	(이용시설)	(포장) 주요 관람 동선 포장 1,832㎡ - (흥례문, 수정전, 집옥재 권역 등) (휴지통) 노후 휴지통 14개소 신규 설치	(포장) 경화마사토 포장 (경희루, 향원정 권역)
	(위생시설)	(화장실) 무선 호출기 30개소 및 점자안내판, 가변실 핸드레일 22개소 설치 등	(화장실) 경내 6개소

(4) 신청인 의견

- 우리나라 대표 문화유산인 경북궁을 장애, 연령, 성별 등 장애없이 누구나 향유할 수 있고, 접근성을 확보 및 안전하고 쾌적하며 보편적 관람 환경을 조성위해 본 사업 시행하고자 함

【 보고사항 】

안전번호 공능 2024-06-08

3.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처리 보고

가. 보고사항

경기도 소재 사적 「파주 장릉」 기존사면 성토 및 구조물 설치 1건에 대하여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자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.

나. 처리내용

문 화 재	소재지	신청인	사 업 내 용	처리결과	처리일자			
(사적) 파주 장릉	경기도 파주시	○○○	<기존사면 성토 및 구조물 설치(허가변경)> ○ 위치: 파주시 탄현면 범흥리 498-2, -6, -10 (3구역, 문화유산구역과 80m 이격) - 인접석축 L형 옹벽 연결마감설치에 따른 지번(498-10) 추가 ○ 사업내용	허가	‘24.5.2.			
						최초허가 (‘23.12.11.)	변경허가 (‘24.4.12.)*	금회 변경허가
			대지 면적			2,459㎡	변동없음	변동없음
			총성 토량			2,147.04㎡	234.38㎡ (감 1,912.66㎡)	234.38㎡ (변동없음)
L형 옹벽	H:1.0~4.7m / L:95m	H:0.2~4.2m / L:94m (규모 감소)	H:0.7~4.7m / L:97.5m (높이 0.5m 증가, / 길이 3.5m 증가)					
* 설계 형태는 동일하면서 규모가 최초 허가보다 감소하는 경우로 경미한 행위 기준에 해당되어 파주시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허가								